

총리령 제 호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나목1)·2) 외의 부분 중 "3천만원"을 각각 "5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)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